

의안번호	제 336 호
의결(보고) 연 월 일	1996. 2. 10 (제 41 호)

의 결 사 항	의 안 기 관
------------------	------------------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 출 년 월 일	1996. 1. 31.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6

제출연월일 : 1996 . 1 . 21.

제출자 : 고성군수

1. 제안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제정으로 조례명 및 관계조문을 정비하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체납된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제명 중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를 "고성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로 함.(안 제1조)
- 나.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질환경보전법 부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공단에 다음사항을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를 "전문기관, 전문방지시설업체, 농공단지입주업체협의회, 환경 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다. 부담금 중 유지관리비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 가산금 및 증가산 금을 적용 함.(안 제27조)
- 라. 조례에 의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기타 조치를 정당 한 사유없이 위반할 시 폐수관거를 통한 폐수나 생활오수의 배출을 중지토록 함.(안 제33조)
- 마. 농공단지 입주사업자중 기업경영 부실로 법원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기 사업자가 가진 모든 권리(용수권, 처리장사용권 등)는 상실토록 함.(안 제34조)
- 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경우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
- 아.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 부칙 2항은 삭제한다.(안 부칙제2항)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증개정조례(안)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 · 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를 "고성군농공단지폐수 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로 한다.

제1조증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내지제27조" 다음에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 를 제9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내지 제16조"를 삽입하고, "율대농공단지공동오 · 폐수처리장"을 "고성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으로 한다.

제2조증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호증"말한다" 다음에 "(이하"사업자"라한다)"를 삽입하고, 같은조 제5호증 "지소장이"를 "수탁자가"로 , 같은조 제7,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탁자" 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관리 책임자로서 군수로 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7. "최초사업자"라 함은 처리장 준공일 현재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하고 부지 분양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8. "중설사업자"라 함은 최초 사업자 이외의 처리장 준공이후 오.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중설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처리장의 관리운영은 군수 또는 군수로 부터 위탁받은 자가 한다.

②처리장의 관리운영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처리장 유입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운전 및 관리
- 2.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을 위한 관할 업소의 관리
- 3.비용부담 산정
- 4.기타 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필요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을 전문기관, 전문방지시설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장 관리운영을 수탁할 경우 시설관리인의 자격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자격에 준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처리구역) 본 처리장의 처리구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고성군 관내 농공단지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

제7조 제1,3항중 "지소장이"를 "군수가"로 하고, 제2항 "지소장"을 "군수"로 한다.

제10조 제1,2,4항중 "지소장이"를 "군수가"로 제2항중 "최초"를 "최종"으로 한다.

제12조중 "(사용개시의 신고)"를 "(사용개시 및 중지의 신고)"로 하고, "지소장"을 "군수"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처리대상 오염 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3조의2의 배출허용기준에 의한다.

1. 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COD : 화학적 산소요구량

3. S S : 부유물질

제1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 2(배출허용기준) ①배출사업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장의 오염물질을 제외한 기타 오염물질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군수의 요청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중 "지소장은"을 "군수는"로 한다.

제15조 제1항제2호중 "폐수배출시설"을 "오.폐수 배출시설"로 하고 제1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의 산출기준은 제3항의 시설설치비 비용부담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농공단지 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7조 제1항중 "제15조 제2항"을 "제15조 제3항"으로, "별지 제6호"를 "별지 제4호"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지소장이"을 "군수가"로 한다.

제20조 제3항중 "지소장은"을 "수탁자는"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중 "지소장은"을 "수탁자는"으로, "별지 제4호"를 "별지 제5호"로 한다.

제2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조 제2항중 "지소장"을 "수탁자"로 "통보"를 "제출"으로 한다.

①사업자가 납부할 부담금은 군금고(수납대행점)에 납부한다.

제24조 제1항중 "지소장은"을 "군수는"로 하고, 같은조 제2,3항중 "지소장이"를 "군수가"로 한다

제25조중 "지소장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27조 제2항중 "100분의 2"를 "1,000분의 12"로, "증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부과금의 100분의 20"을 "증가산금을 가산 징수하는 기간은 60월"로 한다.

제28조중 "별지 제5호"를 "별지 제6호"로 한다.

제29조 중 "지소장의 요청에 의거 군수는 환경보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를 "군수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로 한다.

제30조 제1항중 "지소장은 오.폐수종말처리장"을 "군수는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같은 조 제2항중 "지소장에게"를 "수탁자를 경유 군수에게"로 한다.

제31조 제1항중 "지소장은"을 "군수는"으로 같은 조 제2항중 "30일"을 "15일"로 한다.

제32조 제1항중 "지소장은"을 "군수는"로, "배용"을 "비용"으로 한다.

제33조를 제37조로 하고,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배수중지 처분 및 기타)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폐수관거를 통한 폐수나 생활오수의 배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위반한자.

2. 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자

②제1항 규정외에 위 사항을 위반하여 기준치 이상으로 폐수를 방류시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의법조치 할 수 있다.

제34조(권리상실 및 승계) 농공단지 입주 사업자중 기업 경영부실로 법원 경매에 의한 소유권 변경시 변경전 사업자가 가진 모든 권리(용수권, 처리장 사용권등)는 경락을 받은 소유자가 가진다.

제35조(특별회계 설치) 군수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협의) 최초 사업자의 배출량 증가 및 신규 입주업체 선정시는 입주업체협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부칙의 폐지) 이 조례의 부칙 제2항은 삭제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u>제3조(운영) 율대농공단지 오. 폐수처리장의 운영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질환경보전법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공단에 다음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u>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u>입주하기로 하고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u> 8. "중설사업자"라 함은 최초사업자 이외의 처리장 준공이후 오.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중설한 사업자를 말한다. <u>제3조(운영) ①처리장의 관리운영은 군수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한다</u> <u>②처리장의 관리운영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u>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u>③군수는 필요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을 전문기관, 전문방지시설업체, 농공단지입주업체협의회,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u> <u>④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장 관리운영을 수탁할 경우 시설관리인의 자격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자격에 준한다.</u>
(신설) <u>제5조(처리구역) 본 처리장의 처리구역은 고성군 공고 제70호 의거 율대농공단지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u>	<u>제5조(처리구역) 본 처리장의 처리구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고성군 관내 농공단지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u>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2장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p> <p>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①사업자는 공장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u>지소장이</u> 인정할 때에는 배수시설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u>지소장의</u>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u>지소장이</u>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p> <p>제10조(유량계 및 PH계등) ①오.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오.폐수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오.폐수배출 유량이 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u>지소장이</u>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수있다</p> <p>②유량계의 종류는 <u>지소장이</u>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u>최초</u> 방류구에 설치한다.</p> <p>③(생략)</p> <p>④<u>지소장이</u> 비용부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수질측정계</p>	<p>제 2장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p> <p>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①_____</p> <p>_____ 군수가 _____</p> <p>②_____</p> <p>_____ 군수 _____</p> <p>③_____</p> <p>_____ 군수가 _____</p> <p>제10조(유량계 및 PH계등) ①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 군수가 _____</p> <p>②_____ 군수가 _____</p> <p>_____ 최종 _____</p> <p>③(현행과 같음)</p> <p>④군수가 _____</p>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등을 부착토록 관할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⑤(생략) ⑥(생략)</p> <p><u>제12조(사용개시의 신고)</u> 사업자(장)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 7일전 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u>지소장</u>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u>제13조(배수기준)</u> 오. 폐수배출사업자는 <u>환경보전법시행규칙</u>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항목중 BOD, COD, SS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_____</p> <p>_____</p> <p>⑤(현행과 같음) ⑥(현행과 같음)</p> <p><u>제12조(사용개시 및 중지의 신고)</u> _____ _____ _____ _____</p> <p style="text-align: right;">군수 _____</p> <p>_____</p> <p>_____</p> <p><u>제13조(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u>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3조의 2의 배출허용기준에 의한다.</p> <p>1. 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COD : 화학적 산소요구량 3. S S : 부유물질</p> <p>(신설) <u>제13조의2(배출허용기준)</u> ① 배출사업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장의 오염물질을 제외한 기타 오염물질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대상 오염</p>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u>지소장은 필요시 이의 개·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u>	<u>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군수의 요청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다.</u> 제14조(배수설비의 관리) <u>군수는</u>
제3장 시설설치비의 부담	제3장 시설 설치비의 부담
제15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장시설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이하 "시설설비"라 한다)를 고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u>폐수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u> 따라 오. 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 (이하 "증설사업자"라 한다) <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의 산출기준은 별표1과 같다.</u> (신설)	제15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1. (현행과 같음) 2. 오. <u>폐수 배출시설</u> <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의 산출기준은 제3항의 시설설치비 비용부담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농공단지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u> <u>③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은 별표1과 같다.</u> 제17조(시설설치비의 부과) ① 군수는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후 30일이내에 <u>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u>
	제17조(시설설치비의 부과) ① 제15조 제3항

신·구 조문대비표

신·구 조문대비표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의 배가로 산정 할 수 있다.	_____
제25조(부담금의 추징) <u>지소장은</u> 사업자 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기준을 초과하여 오.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 관거나 처리장시설물 또는 폐수처리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부담금의 추징) <u>군수는</u>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제5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5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27조(가산금 및 증가산금) ②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 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과금의 <u>100분의 2</u> 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u>증가산금</u> 의 합계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u>20</u> 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7조(가산금 및 증가산금) ② _____ _____ _____ <u>1,000분의 12</u> _____ _____ _____ <u>증가산금</u> _____ <u>을 가산 징수하는 기간은 60월</u> _____
제28조(독촉)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기 경과후 15일이내에 <u>별지 제5호</u> 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을 발부일로 부터 10일로 정한다.	제28조(독촉) _____ _____ <u>별지 제6호</u> _____ _____
제29조(체납처분)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제29조(체납처분) _____ _____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u>지소장의 요청에 의거 군수는 환경보전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u></p>	<p>군수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제6장 보 칙</p> <p>제30조(자료의 제출명령등) ①<u>지소장은 오.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케할 수 있다.</u> ②<u>사업자는 매년 12월까지 다음년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 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소장에게 제출한다.</u></p>	<p>제6장 보 칙</p> <p>제30조(자료의 제출명령등) ①<u>군수는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u></p> <p>② _____</p> <p>수탁자를 경유 군수에게</p>
<p>제31조(사용의 제한) ①<u>지소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u> ②<u>제1항에 의한 사용을 제한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u></p>	<p>제31조(사용의 제한) ①<u>군수는</u></p> <p>② _____</p> <p>15일 _____</p>
<p>제32조(배출설비등 미설치 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u>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u></p>	<p>제32조(배수설비등 미설치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 _____</p>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량계 PH계등 조례에 의한 시설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u>지소장은</u>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u>배용</u>을 징수할 수 있다.</p> <p>(신설)</p>	<p>_____ _____<u>군수는</u> _____<u>비용</u> _____</p> <p>제33조(<u>배수중지 처분 및 기타</u>) ①<u>군수는</u>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폐수관거를 통한 폐수나 생활오수의 배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위반한자. 2. 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p>②<u>제1항 규정외에 위사항을 위반하여 기준치 이상으로 폐수를 방류시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의법조치할 수 있다.</u></p> <p>(신설)</p> <p>제34조(<u>권리상실 및 승계</u>) 농공단지 입주 사업자중 기업경영 부실로 법원 경매에 의한 소유권 변경시 변경전 사업자가 가진 모든 권리(용수권, 처리장 사용권 등)는 경력을 받은 소유자가 가진다.</p> <p>(신설)</p> <p>제35조(<u>특별회계 설치</u>) 군수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p>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6조(협의) 최초 사업자의 배출량 증가 및 신규 입주업체 선정시는 입주업체협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p> <p>제37조(시행규칙) (현행 제33조와 같음)</p>
<p>부 칙</p> <p>2. 이 조례 공포일 이후 미가동 업소의 <u>유지관리비 부담은 유지관리비 적용</u> <u>공식 별첨 2종 기본요금만 적용하되</u> <u>오.폐수배출부하량산출표 별첨 1에</u> <u>명시된 값으로 한다.</u></p>	<p>2.(삭제)</p>

[별표 1]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o \quad AS = FC \times \frac{LT - L0}{LT} \times \frac{KI}{KT} + \frac{L0}{LT} \times \frac{LI}{L0}$$

- AS : 입주공장별 부담금
- FC : 최초 사업자의 경우 - 처리장 설치 총 공사비중 입주업체 부담금의 총액
중설사업자의 경우 - 시설설치비의 총 공사금액
- KT : 처리장의 준공시 총 입주업소 규모로서
(0.2 × 부지면적 + 0.8 × 건축면적)
- 부지 및 건축면적의 인정방법 :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상의 면적을 원칙으로
하되 등본상 면적이 실제와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기타 등재되지 않은 경우등
등본상 면적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실측 조사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KI : 해당 업소규모(0.2 × 부지면적 + 0.8 × 건축면적)
- LT : 처리장 설계 오염부하량(전 입주업체의 오·폐수 배출총부하량)
$$\left(\frac{BOD + COD}{2} + 1.3 \times SS \right) \times Q : 오·폐수 배출량$$
- L0 : 처리장설계 폐수 오염부하량(폐수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총폐수부하량)
- LI :
 - 최초 사업자의 경우 : 처리장 설계상의 업소별 폐수배출오염부하량
 - 중설 사업자의 경우 :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서에 기재된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내역서에 의한 일평균 폐수
량 및 일평균 농도로 산출
 - 산출공식은 : $\left(\frac{BOD + COD}{2} + 1.3 \times SS \right) \times Q$
- KT, KI 산정시 단위 ~~m³~~ 기준으로 소수점 2자리 이하 절사
- LT, LI 산정시 단위 g 기준으로 소수점 2자리 이하 절사

[별표 2]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o AS = aM \frac{QI}{QT} + bM (c \frac{QI}{QT} + b \frac{CI}{CT} + e \frac{SI}{ST})$$

[기본요금] [] [처리요금]

- AS : 업주공장별 부담금(월간)
- M : 월간 유지관리비
- 처리장 운영을 위한 1개월간의 유지관리비를 산출하되 직접경비, 간접경비 및 감가상각비로 구분하며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 직접경비 : 처리장 운영예산에서 집행된 월간 총비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제외)
 - 간접경비 : 직접경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감가상각비 :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
- Q : 오·폐수 배출량으로서
 - QT : 전 업소의 오수 및 폐수배출량 - QI : 개별업소의 오수 및 폐수배출량
 - C : BOD, COD 부하량의 평균으로서
$$C = \frac{BOD + COD}{2} \times Q$$
 - CT : 전 업소의 BOD, COD 부하량의 평균치 합계
 - CI : 개별업소의 BOD, COD 부하량의 평균치 합계
- S : SS부하량으로서
- ST : 전 업소의 SS부하량 - SI : 개별업소의 SS부하량

o a, b, c, d, e : 농공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시켜야 할 산출계수

a : 기본요금의 유지관리비 총액에 대한 배분율

$$(= \frac{\text{기본요금}}{\text{유지관리비}})$$

b : 처리요금의 유지관리비 총액에 대한 배분율

$$(= \frac{\text{기본요금}}{\text{유지관리비}})$$

c : 처리요금중 유량에 대한 배분율

$$(= \frac{\text{유량 기본요금}}{\text{처리요금}})$$

d : 처리요금중 BOD, COD부하에 대한 배분율

$$(= \frac{\text{BOD, COD 부하 배분요금}}{\text{처리요금}})$$

e : 처리요금중 SS부하에 대한 배분율

$$(= \frac{\text{SS부하 배분요금}}{\text{처리요금}})$$

(참고) 세부산출 방법

가. 업소별 폐수량 및 오염부하량 (BOD, COD, SS)의 산정

- 폐수 배출업소는 적산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폐수량을 산정 적용한다.
- 배출폐수의 오염부하량은 정기적으로 폐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농도를 적용하여 분석시기, 횟수등은 입주업체 대표자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최대 발생폐수량(설치계획최대량)을 적용한다.
- 극히 소량의 폐수를 배출하여 유량계 설치에 의한 유량산정 및 폐수 채취가 불가능한 업체는 등종 업체의 폐수발생 원단위를 적용한다.

나. 업소별 오수량 및 오염부하량 (BOD, COD, SS)의 산정

- 전체 오수의 배출량 및 그 오염부하는 폐수종말처리장 유입 오·폐수량 및 오염부하에서 전체 배출량 및 그 오염부하량을 감한 값으로 한다.
- 업소별 오수배출량 및 오염부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cdot \text{전체오수량} \times \frac{\text{업소별 생활용수 사용량(수도사용량)}}{\text{농공단지 전 생활용수 사용량 (수도사용량)}} \text{ 또는}$$

$$\cdot \text{전체오수량} \times \frac{\text{업소별 종업원수}}{\text{농공단지 전 종업원수}}$$

다. 기본요금 및 처리요금의 배분율 (a, b)

기본	내용	배분율
유지관리비	기본요금 + 처리요금	$a + b = 1$
기본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현장관리인 인건비 · 흙생부지비 · 사무관리비 : 인건비 × 5% · 동력비중 기본요금 · 감가상각비 	$a = \frac{\text{기본요금}}{\text{유지관리비}}$
처리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력비중 사용요금 · 약품비 · 오너처분비 · 시설유지 보수비 	$b = \frac{\text{처리요금}}{\text{유지관리비}}$

- 기본요금 및 처리요금의 내용구분은 상기 기준에 의거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공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업체 대표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a, b의 값을 산정하기 위한 각 항목별 비용은 환경관리공단에 문의 할 것.

라. 처리요금중 유량과 BOD, COD, 부하 및 SS부하에 대한 배분율(c, d, e)

구 분	내 용	배 분 율
처리요금	다음 각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운영요원 및 보조원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설유지보수비, 동력비 중 사용료, 약품비 및 오니 처분비의 합계	$c + d + e = 1$
유량배분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계 실 침사지, 유입펌프장 최초 침전지 관리 등 변전소 및 계장설비 조경 및 부대공사 	$c = \frac{\text{유량배분요금}}{\text{처리요금}}$ $\therefore c = 0.1560$
BOD, COD 부담배분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침전지 폭기조 송풍기등 	$d = \frac{\text{BOD, COD부하배분요금}}{\text{처리요금}}$ $\therefore d = 0.5057$
SS부하배분 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축조 및 오니저류조 오니 탈수기등 전조상등 기타 	$e = \frac{\text{SS부하 배분요금}}{\text{처리요금}}$ $\therefore e = 0.3383$

- c, d, e의 배분율은 환경관리공단의 설계예산서 및 도면에 의해 산정한 값을 원칙으로 하나, 입주업체 대표자들과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상기 시설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능한 한 기능별로 분리하여 해당 항목에 적용한다.
- ※ 기타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비 산출방법에 필요한 자료는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하기 바람.

[별지 제1호 서식]

폐수설비설치(변경)승인신청서

신고인	①상호또는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인	④주 소	⑤전 화 번 호	
사업장	⑥사업자 명칭		
	⑦사업장소재지	⑧전 화 번 호	
	⑨업 종	⑩주 생 산 품	
	⑪착공 예정일	년 월 일	⑫준공 예정일

고성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폐수설비 설치내역서
 - 가. 공사실시 설명서
 - 나. 폐수설비의 폐수관거의 접속관계
 - 다. 폐수 맨홀 복구 계획서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통
3. 공정도 1통
4. 원료(연료용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통

[별지 제2호 서식]

폐수설비사용(중지)신고서

신	①상호또는명칭		
고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인	④주 소	⑤전 화 번 호	
⑥사업자명칭			
⑦사업장 소재지		⑧전 화 번 호	
⑨업 종			
⑩설치완료년월일			

고성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제12조에 의거

사용개시(중지)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시설설치비부담대상신고서

신고인	① 상호또는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전화번호	
	⑥ 배수시설사용개시일	

고성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제16조에 의하여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2.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내역서 1통

[별지 제4호 서식]

시 설 설 치 비
 (분기) 부담금 상환 납부 고지서

업체명	
대표자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처	
세입과목	
부 담 근 거	

상기와 같이 폐수종말처리장 시
 설설치비 상환부담금을 납부 고지
 합니다.

19 년 월 일

고 성 군 수

납 부 영 수 증
 (분기) 시설설치비부담금상환금

업체명	
대표자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처	
세입과목	
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귀하

납부영수필통지서
 (분기) 시설설치비부담금상환금

업체명	
대표자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처	
세입과목	
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
 을 통지합니다.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유지관리비
()월분유지관리비납부고지서

업체명			
대표자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납기후금액	원		
납부처			
세입과목			
부 담 근 거			
수량	BOD	COD	SS
m ³ /일	mg/l	mg/l	mg/l
상기와 같이 폐수종말처리장 유지 관리비 부담금을 납부 고지 합니 다.			
19 년 월 일			
고 성 군 수			

납부영수증
()월분유지관리비

업체명			
대표자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납기후금액	원		
납부처			
세입과목			
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귀하

납부영수필통지서
()월분유지관리비

업체명			
대표자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납기후금액	원		
납부처			
세입과목			
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고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독촉장

상 호		성 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장)				
구 분	체 납 기 간	체 납 금 액		
		계	부 담 금	가 산 금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철학은 그 자체로 독립된 철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고 성 군 수 (인)

귀하

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성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군청 환경보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